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경 등〉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53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경 등	2
2. 개정안 부칙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지연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다 낮추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비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의 설치 기준도 2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경 등(안 제27조제1항제1호)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특수교육 대상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제1호 본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배치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영아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호 단서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 ----- ----- -----.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4인</u>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	1. ----- ----- <u>3인</u> ----- -----

고, <u>4인</u>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u><단서 신설></u> 2. · 3. (생략) ② · ③ (생략)	-----<u>3인</u>----- -----<u>. 단</u> <u>만,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u> <u>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u> <u>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u> <u>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u> <u>상의 학급을 설치한다.</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1)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경

- ☐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 초등·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별로 학급을 설치하는 인원 기준이 정해짐.
- ☐ 현행 규정은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3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고, 3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바, 유치원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취지에 공감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 학급 설치 기준]

구 분		설치 학급 수
유치원 과정	현 행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4인 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안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3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3인 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로,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교(804명)와 유치원 특수학급(5,524명)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총 6,328명으로, 특수학교와 유치원에 총 1,917개 학급(특수학교 257학급, 유치원 1,660학급)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

[특수교육대상유아 특수학교(급) 현황]

< 단위: 학교(유치원), 학급, 명 >

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수	학급 수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	유치원 수	특수학급 수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
126	257	804	1,275	1,660	5,524

자료 : 교육부

- 한편, 개정안과 같이 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① 학급 신·증설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② 증설에 따른 교사 정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①현행법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1) 출처: 특수교육연차보고서('25.4.1.기준)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 ②특수학교(급)의 학급 설치 기준이 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및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여건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치원 과정의 학급당 학생 수를 일률적으로 감축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시·도교육청>

(대구, 광주 - 신중검토) 현재 유치원 과정에서 특수교육기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원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 기회 제한 및 예산 부담(교직원 인건비, 특수학급 신·증설비, 운영비 등)이 우려됨.

2)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학급 설치 기준 마련

- 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 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하고 있음²⁾.
-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이 37개 설치되었고, 장애영아 수는 92명인 것으로 나타났음³⁾.
- 개정안은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있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위하여 별도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유치원 과정의 경우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교 37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69학급, 총 106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고,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92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268명으로 총 360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23명, 1세 132명, 2세 205명으로 총 360명임(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2025.8, p45).

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⁴⁾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영아의 교육 여건을 보다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 학급 설치 기준]

구 분		설치 학급 수
유치원 과정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4인 을 초과하는 경우
	만 3세 미만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2인 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부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급의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의 학급 기준보다 하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4) 일반적으로 유치원 과정의 경우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부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⁵⁾, 개정안의 경우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학급의 설치 및 인력의 채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5)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